

별첨**항만운영 방역수칙**

본 지침은 기본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항만운영 방역수칙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6.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목 차

I. 일반사항	1
1. 목적	1
2. 관련 법령 및 규정	1
3. 적용 일반	1
II. 외항선 입·출항시 주요 접촉작업 현황	2
1. 작업 개요	2
2. 작업별 접촉 강도	3
3. 화종별 접촉 강도	4
III. 항만운영 방역 지침	5
1. 일반지침	5
2. 주요 작업별 방역지침	6
3. 항만 하역 방역지침	8
IV. 생활방역수칙 이행점검(안)	10
1. 이행점검 계획	10
2. 작업장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1
3. 현장 안전성 체크리스트	13

I. 일반 사항

1 지침 수립 목적

- ☐ 본 지침은 항만에서 선박이 입·출항 과정에서 항만 내 근로자와 외항선 선원이 접촉하는 주요 작업을 식별하고 작업별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항만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항만으로부터 지역사회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관련 법령 및 지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8판 (고용노동부)

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2판 (고용노동부)

라. 마스크 사용 지침-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마. 항만업무지속계획(BCP) (해양수산부)

3 적용 일반

- ☐ 본 지침은 선박 입·출항 관련 주요 작업과 항만 내 하역작업의 방역 관련 대표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본 지침을 기반으로 항만 및 하역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방역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Ⅱ. 외항선 입·출항시 주요 접촉작업 현황

1. 작업 개요

- (입항단계) 입항 일정에 따라 도선 요청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검역 전 승선 허가 신청)하여 목적지까지 선박 조선 및 접안

* 「검역법 제9조」에 따라 선장(검역 감염병 환자 유무 정보 사전 고지)→검역당국→지방해수청→도선사지회 정보 전달

- 선박 접안 후 검역공무원이 승선하여 선박 검역상태를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대리점이 승선하여 입항수속 진행

* 「검역법」제13조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 불가

- (접안단계) 선박 접안 중 화물 하역을 위한 관계자(검수사, 하역사 관계자 등) 및 선박 요청이 있는 경우 선용품·연료·선박수리업체 승선

- (선박대리점) 선박 승선 후 입항 수속 진행

- (검수·검량·감정사) 화물 양·적하 전 화물창, 화물상태 확인

*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화물의 개수, 상태 확인을 위해 검수사 승선, 액체·산물 등의 경우 화물의 용적·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검량·감정사 승선

- (하역사) 화물 양·적하 절차 및 안전규정 협의(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 배치)

- (항운노조 등) 화물 양·적하 작업 수행

- (물품공급) 선사 요청이 있는 경우 선용품(부식, 선박 기자재), 선박연료 공급

- (선박수리업자) 선사 요청이 있는 경우 선내 기관 수리

- (출항단계) 검수·검량·감정사 승선, 부두 운영사 관리자 승선, 선박 대리점 직원 승선, 도선사 승선(강제도선 대상 선박)

- (검수·검량·감정사) 화물 양·적하 전 화물창, 화물상태 확인

- (선박대리점) 출항수속 절차 진행

- (도선사) 강제도선 대상 선박 도선사 승선 및 출항 조선

2. 작업별 접촉강도

□ (접촉강도) 선원 대면 접촉 필요성을 기준으로 직·간접으로 분류 가능

- 직접접촉 : 도선사, 선박대리점, 검수·검량·감정사, 하역사, 선박수리, 선용품공급, 선박연료공급업
- 간접접촉 : 하역근로자

〈선박 입·출항 주요작업 접촉강도〉

검역 여부	주요 작업		선원 접촉강도		
	작업명	작업내용	직접	간접	비고
검역 前	도선	「도선법」에 따른 강제도선선박 입출항(접안) 도선(검역 전 승선)	○	-	해기사 접촉
검역 後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검역완료 확인 후 승선	대리점	선박의 입·출항 수속 등 대행	○	-	해기사 접촉
	접안 지원	(예인) 선박에 예인사를 걸어 도선사의 명령에 따라 선박을 밀거나 끌어서 접안 지원	×	○	예인사 설치 시 선원 간접 접촉
		(줄잡이) 선박으로부터 계류사를 건내받아 육상 계선주에 걸어 선박 고정	×	○	계류사 받을 때 선원 간접 접촉
		(하역사) 선박 접안 시 접안 위치 조정, 화물 양적하 절차 및 안전규정 협의	×	○	
	하역 작업	하역장비 또는 인력을 투입하여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	○	하역 작업 시 선원 조우 가능성
	검수·검량·감정	화물 하역 전·후 화물량, 상태 등 확인	○	×	해기사 접촉
	선박수리	선사 요청이 있는 경우 선내 기관 수리 등	○	×	선박 수리 시 기관부 선원 접촉
	선용품	선사 요청이 있는 경우 부식, 기자재 공급	○	×	선박 수리 시 해기사
	선박급유	선사 요청이 있는 경우 선박에 접안하여 공급	○	×	선박 수리 시 기관부 선원 접촉

3. 화종별 접촉강도

- '19년도 기준 화종별 외항선 입항(총 80,299척) 내역은 풀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석유제품운반선 순으로 집계

2019년 전국 무역항 외항선 주요 선종별 입항척수

	소계	풀컨테이너선	산적화물선	석유제품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기타
외항선 입항척수	80,299	24,168	21,959	7,953	3,071	2,275	1,508	19,365
비중(%)	100	30.1	27.4	9.9	3.8	2.8	1.9	24.1

- (접촉강도) 선박 입항 빈도 및 하역작업 특성에 따른 선원 대면 접촉 강도는 ① 산적화물(원양 어선 포함) ② 컨테이너선 ③ 석유제품운반선 ④ 자동차 운반선 순으로 확인 됨

〈화종별 하역작업 접촉강도〉

주요 작업		승조원 접촉강도		
화종	작업내용	직접	간접	비고
산적화물 (어획물, 냉동품 포함)	(기계하역) 크레인 등 기계를 통하여 하역하는 경우 잔류 화물 처리 시에만 작업자가 선내로 투입되어 직접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X	O	하역작업시 선원 조우 가능성
	(직접하역) 어획물 등 작업자가 화물창에 직접 투입되어 수작업으로 화물이 하역되는 경우, 선내 채류 시간이 길어 선원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음	X	O	
컨테이너	(화물하역) 컨테이너의 하역은 기계로 진행됨에 따라 선원 대면 접촉 강도는 매우 낮음 (화물고박) 컨테이너화물 고박 및 해체 작업 시 작업자가 선박에 승선하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선원과 직접 접촉 가능성 증가	X	O	하역작업시 선원 조우 가능성
석유제품 운반선	(화물하역) 화물의 하역은 선박-육상 간 배관을 통하여 하역됨에 따라 하역중 접촉 가능성은 없음 (작업관리) 터미널 별로 하역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가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가 있어 선원과 직접 접촉 가능성 존재	O	X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기사 접촉
자동차 운반선	(화물하역) 하역현황을 감독하는 선원과 작업자 간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 낮음	X	O	하역작업시 선원 조우 가능성

Ⅲ. 항만운영 방역 지침

1. 일반지침

< 준비 단계 >

- (인력 관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 및 작업투입 배제
 - * 출근 시 또는 작업 투입 전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체온측정 기록)
- (방역물품) 각 작업구역 및 휴게실, 위생시설(화장실, 세면장 등)별 방역물품(손세정제, 일회용 타월 등) 및 뚜껑이 있는 전용 수거통 비치
- (대면자 지정) 입항 선박별로 선박(선장)·부두운영사(관리자)·하역작업자(작업반장) 등으로 대면자를 지정하여 접촉 최소화
 - * 부두별로 외부 출입자 대면 장소(회의실 등) 지정 및 집중 방역
- (출입자 관리) 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접촉자 관리를 위한 항만 출입자 명단 작성(체온 측정 기록 포함) 철저
 - * 항만관리청, C.I.Q기관, 항만하역 종사자, 대리점, 항만관련사업자 등
- (비상연락망 구축) 부두 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의심환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고 절차(검역소, 항만관리청 등) 마련 및 대응

< 작업 단계 >

- (개인 보호구) 항만 출·입자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마스크, 필요시 보안경 및 위생장갑) 착용 철저 및 미착용자 출입 통제
 - * 부두 별 출입구 보안담당자가 출입자에 대한 방역물품 착용 여부 확인 및 통제
-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항만 내 작업·대기·휴식 시 작업자 간 안전거리 2m 이상(최소 1m*) 유지
 - * 안전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비대면 작업 지향) 안전절차, 화물량 계산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 이메일, 무선통신기기 등을 통한 비대면 작업 실시
- (비인가 물품 관리) 항만근로자의 선박 작업 시 선박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의 음용 및 물품(방역물품, 공구 등)의 사용 금지

2. 주요 작업별 방역지침

< 도 선 >

- ① (승선 전) 검역 전 선장이 검역소장에게 감염병 환자 유무 정보 사전 고지(선장→검역당국→지방해수청→도선사지회)
- ② (승선시) 선원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사전 통보(VHF 등 이용)
 - * 검역 전에 작업을 수행하므로 승선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조치(보호복, 마스크 및 장갑착용) 필요
- ③ (승선중) 개인 보호구(마스크, 위생장갑, 필요시 보안경, 방호복) 착용 철저 및 조선 중 선원과 안전거리 유지(무전기 적극 활용)

< 입·출항 지원 >

- ① (예인·줄잡이) 선원과 대면은 없으나, 계류작 등을 통하여 간접 접촉이 이뤄지므로 작업자는 위생장갑 착용 및 작업 후 세정 등을 통한 방역 유지
- ② (하역사) 부두 접안 시 선박-부두 간 접안 위치 확인, 승하선 사다리 설치 등을 위하여 선박과 접촉하는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검역 완료 전까지 하역 관계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 철저

< 입·출항 수속 대리점>

- ① (입항 전) 유증상자 여부(14일내 승하선자 포함) 확인 및 확인서(체온측정 등) 장구
 -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 확인 시 항만관리청, 검역당국 즉시 전파
- ② (입출항 수속) 선박 입항 전 선박 수속 장소(선박사무실) 및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토록 하여 수속 진행 중 선원 접촉 최소화
 - 선박 입·출항 수속 시 선내 거주구역 출입 및 선원과 밀접하게 접촉하므로, 개인 보호구(마스크, 보안경, 위생장갑) 착용 철저
 - 수속 완료 후 선장이 서명한 선원 건강기록(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이상여부 항만관리청, 부두관리사 통보
- ③ (선원 관리) 선원 승·하선 여부, 상륙 시 출입국 사무소 사전협의 및 허가 후 시행, 선원 이동 시 전용 차량을 통한 외부접촉 최소화

< 급유 · 선용품 공급 · 선박수리 >

① (공 통) 선박(대리점)은 선박에서 선용품(기자재, 부식 등), 연료유 공급 및 선박수리 요청 시 수배 업체 및 작업자 명단을 확보 필요

- 공급업체에서는 작업 완료 후 작업완료 시간 및 실제 투입 작업자 명단 및 이상 유무 등 대리점 통보(필요 시 관계기관 전파)*

* 대리점에서는 유증상자,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등으로 항만관리청, 검역 당국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② (연료공급) 급유 호스 연결 등 작업 시 개인 보호장구(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착용한 최소 인력으로 진행 및 선박으로의 승선 자제

- 공급량 확인 등 선박-연료공급업체 간 상호확인이 필요한 작업은 양측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작업하되 보호구 착용 및 안전거리(2m) 유지
- 작업 완료 후 개인 보호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재사용 불가)

③ (선용품 공급) 선용품 검수는 에이프런 등 야외에서 선박 측 선원의 입회하에 진행하되 상호간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거리 유지

- 육상 측에서의 선용품 공급이 불가능하여 선박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1차 자체 검수 후 선박에서의 검수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승선 확인
- 공급 확인 서류의 작성 등은 가능하면 전자서류로 대체 또는 대표자를 지정 및 작성하여 선박과의 접촉 최소화

④ (선박 수리) 선박에 지정된 회의실에서 최소 인원으로 선박 수리 협의 및 지정 선원과 동행하여 선박 수리 현장 확인(개인 안전장비 착용 철저)

- * 작업 중 선원-작업자 간 접촉 최소화 방안 등 결정(무전기 사용 등)
- 선내에서 안전을 위하여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되, 선원과의 접촉은 최소화하고 수리개소 시운전을 위한 선원 입회 시 안전거리 유지

3. 항만 하역 방역지침

< 항만 하역작업 >

- ① (하역작업 전) 입항 시 대리점이 선박 내 유증상자 여부(14일 이내 선원교대 포함) 등을 확인하여 하역사 및 작업반장*과 공유

* 하역관계자 등은 현장 안전성을 확인(선원 발열체크 여부, 선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하고 이상상황이 있는 경우 항만당국에 보고

- ② (하역작업 중) 하역사는 작업 전 선박 측에 선원의 불필요한 하역 현장 출입 및 상륙(부두 내 배회)을 금지하도록 요구

- 선원과의 접촉이 없더라도 하역작업자는 선내 작업 시 가급적 KF 80이상의 마스크 착용*

* 선원과의 무접촉, 동료 작업자와의 2m 거리가 확보된다면 비말마스크 착용 가능

- 하역 작업자는 선원과 구분할 수 있는 복장 등으로 선원과 구분

- 화물창 개·폐 등 선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작업반장 등 관리자를 통하여 무선을 통한 비대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 작업 중 화장실 등 선내시설(휴게실, 화장실) 및 물품(식·음료, 공구) 사용 불가

- ③ (하역완료 후) 작업반장 등 관리자를 통한 하역완료 통보 및 선내 투입 작업자 세면·손세정 등 개인위생 철저

* 작업 중 사용된 개인 보호장비는 지정장소에 폐기

< 화종별 하역작업 유의사항 >

- ① (벌크-수작업) 원양어선, 냉동·냉장선 등 수작업으로 하역이 진행되는 경우 하역관계자 등이 현장 안전성을 확인(선원 발열체크 여부, 선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하고 이상상황이 있는 경우 항만당국에 보고한 뒤 하역작업 개시

- ② (컨테이너) 라싱작업(컨테이너 고정·해체 작업) 투입 전 하역관계자 등이 현장 안전성(작업장소와 선원 간 이격)을 확인하고 하역작업 개시

* 라싱작업 시 근로자 간 최소 1m 거리 확보, 작업자 간 접촉 시 마스크 착용

- ③ **(벌크-기계하역)** 벌크(양곡, 광석, 석탄, 시멘트, 철제 등)의 경우 특수 기계로 하역작업이 진행되며, 잔탄 제거 등 작업 시 하역근로자가 투입되는 경우 하역작업 지침 준수 필요
- ④ **(액체화물)** 로딩암 체결 등 파이프라인 작업 시 선원과 최소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 시 방폭무전기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 *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 ⑤ **(자동차선)** 자동차 운전자가 선내 진입하는 경우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

< 항만 하역 방역 지침 >

현장별	주요 내용
승선 전	○ 선내 진입 전 대리점 주관으로 선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확약서 징구 ○ 선원과 하역근로자간 접촉 최소화 ○ 하역 순서 등 협의 시, 선원 마스크 착용 필수 및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필요시 무전기 사용 ○ 작업장에 손소독제 및 마스크 구비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자제
선내작업	○ 선원은 마스크 착용 필수, 하역근로자와 접촉 금지 - 작업 시 필요한 경우 선원/하역작업자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가능한 2m 이상 거리에서 의사소통 ○ 하역작업자 갱웨이 등 선박승선 시 KF80 이상 등급 마스크 착용 ○ 갑판 등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비말마스크 착용 (단, 이 경우 선원은 선실내 대기 등 선원과 비접촉)
작업 종료후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공용사용(손잡이, 하역운반장비) 소독 - 매일 1회 이상, 표면 소독 ○ 사용된 마스크, 장갑 폐기 - 사용된 마스크 및 장갑은 지정된 장소에 폐기 ○ 작업 종료 후 밀집장소 방문 자제
마스크 사용 지침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참고 - 항만하역 근로자의 경우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종사자에 해당 - 기본적으로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필요(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야외작업의 경우 2m거리 확보가 안되는 경우 비말마스크를 사용 ○ 원양어선 냉동 어창 등 물리적으로 방역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동료와 이격이 어려운 경우 방한마스크를 2중으로 착용하여 작업 실시